

수원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20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문기

피 고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18. 3. 12. 체결한 손해배상 비용합의에 따른 도로사업 위수탁협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체결 경과

1) 용인시장은 용인시 C지구 일대를 개발(이하 ‘C지구 개발’이라 한다)하고자, 2004. 3. 31. 용인시 고시 D로 용인시 수지구 E 일원 1,603,380㎡를 C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C지구 개발계획에는 참가인 외에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 H, I, J 등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참가인은 2005. 12. 30., F는 2004. 10. 5. 각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3) 그 뒤 용인시장은 참가인과 F 등을 기반시설부담의무자로 하여 2006. 1. 9. 용인시 공고 K로 기반시설부담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뒤, 2006. 3. 14. 용인시 고시 L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하여 총 부담비용을 약 5,513억 원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고시(이하 ‘2006년 고시’라 한다)하였고, 2006. 5. 11. 참가인에 대하여는

88,416,978,7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F에 대하여는 27,770,753,9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각 부과지하였다(납부기한 2006. 7. 10.).

4) 용인시장은 2008. 2. 20. 용인시 고시 M(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부담 방법을 2006년 고시에서 정한 방법과 달리 변경한 뒤, 2008. 2. 26. 참가인에 대하여는 88,416,978,7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F에 대하여는

27,770,753,900원의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납부기한 2008. 3. 10., 이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관련소송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체결

1) 참가인과 F는 2006년경 용인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호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후의 관련소송 진행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심급구분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자	주문의 요지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6964)	2009. 7. 8.	용인시장의 2008. 2. 20.자 C지구 기반시설부담금 확 고시 및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나머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각 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	2011. 2. 9.	항소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1두7793)	2014. 2. 27.	파기환송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4누3237)	2015. 11. 12.	항소기각
재상고심	대법원 (2015두4167)	2016. 7. 14.	파기환송

2)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2. 재환송심 판결에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에 일부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고시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참가인과 F의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재환송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참가인 및 F의 피고에 대한 사정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참가인에게 3,273,441,333원, F에게 2,848,835,0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참가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

3) 서울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와 참가인 및 F는 2018. 3.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비용합의에 따른 도로사업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손해배상 비용합의에 따른 도로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조(목적)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피고가 참가인 및 F에 지급하도록 판결된 손해배상 지급액 총 6,122,276,335원에 대한 지급방안을 위해 C지구 내 도로 N(구 O)의 사업 위 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본 협약을 함에 있어, ‘갑(용인시장)’과 ‘을(참가인과 F)’ 상호간의 판결문 손해배상금 지급 및 정산 등의 모든 경우에는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근거한 기반시설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금액)

1.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 판결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참가인: 2,848,835,002원
- F: 3,273,441,333원
- 손해배상액 합계: 6,122,276,335원

2. 위 참가인과 F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도로공사 위 수탁 시행)

‘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부과되어 설치예정인 직접설치 기반시설 N(구 O)의 설치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 시행을 위탁하여 ‘갑’이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 시설명: N(구 O)
- 규모: 연장425m(면적 2,554㎡)
- 총사업비: 9,873,400,000원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판결문에 근거한 사업비)

제6조(도로공사 위 수탁에 따른 사업비 부담)

N(구 O)에 대한 도로공사 위 수탁에 따라 ‘을’이 납부하여야 할 사업비는 총 사업비 9,873,400,000원 중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6,122,276,335원을 총 사업비 부담액에서 상계하고 잔여사업비 3,751,123,665원을 현금납부토록 한다.

제7조(사업비 납부시기)

본 도로공사 위 수탁 협약에 따른 총 사업비 중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잔여사업비의 납부시기는 ‘을’의 공동주택사업(2단지) 분양승인 후 5개월 시점까지 50%, 공사완료 예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50%를 납부토록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본 협약에 따른 위수탁 기반시설의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을’이 납부할 사업비의 최종납부 시기는 ‘을’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준공시점 이전에 납부완료토록 한다.

제8조(본 협약에 따른 효력)

1. 본 협약서에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합의에 따라 지급종결된 것으로 보고, ‘갑’, ‘을’ 쌍방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본 협약서에 따라 ‘을’이 N(구 O)의 잔여사업비 납부를 완료시 ‘을’은 본 도로공사(N(구 O))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시행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공동주택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본 도로공사 위 수탁에 따른 사업비 정산)

1. N(구 O)에 대한 도로공사 부분(이하 “본 도로공사”라 한다)의 사업비는 본 도로공사 및 ‘을’의 공동주택사업 준공 후 본 도로공사에 실제 투입된 사업비(토지비, 공사비)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산한다.

2. 위 1.항의 합의정산시 ‘갑’은 ‘을’에게 본 도로공사에 투입된 사업비(토지비, 공사비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산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후의 조치)

1. ‘갑’과 ‘을’이 사업비 합의정산 후 총 사업비 9,873,400,000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토록 하고, ‘을’은 ‘갑’에게 위 초과금액을 지급한다.
2. ‘갑’과 ‘을’이 사업비 합의정산 후 총 사업비 9,873,400,000원보다 투입된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사업비 잔액을 반환토록 한다.

다. 원고의 선행 민사소송 결과

- 1)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23.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0978호).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 모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10. 2. 참가인은 원고에게 683,673,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3523호),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2014. 2. 25. 위 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5895호로 채무자를 참가인,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00,866,790원으로 하여 참가인이 관련소송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일체의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2.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9. 7. 4.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의 대상 또는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203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19. 12.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19나15232호), 대법원은 2020. 5.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인 2018. 8. 9.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6. 11.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31. 제출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8893호)에 관한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참가인에게는 지방세 채납액 760,524,190원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사실, 이 사건 추심금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2018. 8. 8.자 답변서 및 이에 첨부된 이 사건 위수탁협약서가 2018. 8. 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참가인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참가인의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참가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참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C지구 내 N(구 O)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F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채권을 상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통모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는 이상,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22574, 225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참가인의 책임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궁극적으로 참가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채권 88,416,978,700원은 이 사건 고시 등에 따라 2008. 3. 10.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반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273,441,333원은 위 사정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채권자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3,273,441,333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기반시설부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가인의 채권자가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승인 및 공사완료 예정통지일과 연계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2018. 3. 12.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7조는 이미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으로 정해진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인 2008. 3. 10.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승인 및 공사완료 예정통지일까지로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관련소송 재환송심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해당 사업과 무관한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과 이미 시공하여 기부채납을 마친 기반시설의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관련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야 사정판결을 한 결과, 피고의 참가인과 F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채권과 참가인과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병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참가인, F 사이에 위 양 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C지구 개발계획에 참여하며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5개의 업체들은 개발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으로 새로이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거나 타 사업자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대신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수탁협약으로 참가인이 부담하게 될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 액수가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가 연장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위수탁협약으로 참가인이 설치한 기반시설이 당초 설치하기로 한 기반시설에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내용이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기반시설부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참가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참가인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률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참가인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과 피고가 통모하여 참가인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춘근, 판사 김진성, 판사 김민아